	법원행정처 행정심판위원회
	재결
1. 사 건	2018행심20 판결문사본제공불허처분 취소
2. 청 구 인	박형준 3. 피청구인 서울고등법원장
4. 주 문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5. 청구취지	별지 기재와 같음
6. 이 유	별지 기재와 같음
7. 근거법조	행정심판법 제43조 제2항
	위 사건에 관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2018. 3. 12. 법원행정처 행정심판위원회

3 N.

청 구 취 지

5 - -----

피청구인이 2018. 1. 24. 청구인에 대하여 한 판결문 사본 제공 불허 처분(서울고 법 2017노2425 판결문)을 취소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8. 1. 23. 피청구인에게 서울고등법원 2017노2425호 사건의 판 결문 제공을 신청하였다.

■ 서울고등법원 2017노2425호 판결 :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항소심 판		
결문(피고인1. 김기춘, 피고인2. 조윤선, 피고인3. 김상률, 피고인4. 김소영, 피고		
인5. 김종덕, 피고인6. 신동철, 피고인7. 정관주)		
나. 피청구인은 2018. 1. 24. 청구인에 대하여 신청 대상 사건은 공개제한 사건		
이므로 판결문을 제공할 수 없다는 판결문 사본 제공 불허 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2018. 1. 25.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① 신청 대상 사건의 피고인들이 '판결서 열람 및 복사 제한 신청'		
을 한 사실이 없고, ② 언론사 기자들에게는 실명 판결문을 제공하면서 일반 국민		
에게는 비실명 판결문조차 제공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상사건에서 피고인들은 판결문 열람복사 제한 신청을 한 바 없으나, 증인이		

이를 신청하였고, 그 신청을 받아들여 판결서 등의 열람복사를 제한한 것이다.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형사소송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제5호에 따라 소 송관계인인 증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 히 해활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판결문 사본 제공 신청이 불허된 것이므로, 전자우편 등을 통한 판결문 제공에 관한 예규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 하다. 또한 피청구인이 신청 대상사건의 판결문을 언론사 기자들에게 제공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언론사 기자와 일반 국민을 차별하였다고 볼

~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정본입니다.

2018. 3. 12.

ELCIXAND

RESE

The restore to the second second second

26

and the

법원행정처 행정심판위원회

※ 재결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이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 기하여야 합니다.